

2008 새해설계 ⑦

일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신영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형점 주차장 이용 직거래 장터 농가수익 증대 기대

일동농업협동조합은 2,965명의 조합원과 1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지난해 관내 일동고등학교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장학금은 매월 직원급여 지급시 2만원씩 모아서 직원장학회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하나로 마트 및 농자재마트를 개장했다. 하나로 마트는 400평 규모, 농자재 마트는 100평 규모로 모두 2층으로 지어졌으며 투자금액은 토지 24억원, 건물 66억원 등 모두 90억원이 소요됐다. CS(고객만족)컨설팅 평가에서 일동농협 본점 102.6점, 이동지점 96점, 기산지점 98.6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이같은 실적은 포천시 관내 농협 중 경기도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고객만족 최우수 사무소라고 평가했다.



신영필(사진) 일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농협은 농민의 소득사업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농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뛰는 농자재 값은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고착되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각종 농업용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낮았으나 기름 값은 3배 가까이 상승하고 1월말 물가 동향을

보면 수입농산물인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양돈용 배합사료 25.9%, 비육우용 30.2%, 낙농용 27%, 일반 배합사료 31.5%가 급등했다. 올해 한미 FTA가 타결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한·중, 한·일, 한·EU 등 계속해서 FTA가 타결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농촌이 어려워 농협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신 조합장은 “포천시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더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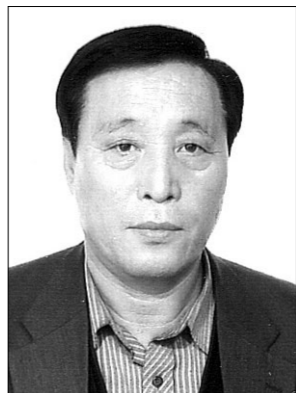
비로, 농약, 농자재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유류저 농지를 이용해서 옥수수(사료용)를 재배하여 수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일동농협은 올해부터 벼농사만큼은 지역에 맞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극조생종 벼 단지조성과 고품질쌀(고시히가리) 단지를 조성했으며 일동, 이동, 화현 등 세 곳에 시범포를 운영해서 지역에 맞는 쌀을 생산하여 수매가를 높여 주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경기미 공급이 모자란다고 하면 농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수매가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백화점을 대형점으로 개장한 것도 농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형점을 개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

으며 마트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일동농협 관내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다. 일동농협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글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계속 연계해서 우리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또한 농촌사랑봉사단이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독거노인 집안정소, 발맞가지 후 점심제공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지역에 환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일동농협회를 결성해 일동고등학교에 매년 21명에게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원 종합건강 검진비를 보조하고 있다. 신 조합장은 일동농협은 원로 조합원 생신이 되는 날 아침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신을 축하드리려는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직원들이 1년에 5,400만원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어 포천신문 지역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일동농협이 낱알이 발전할 수 있고 진정한 농업인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지역 사업소 159 유성CNC산업

인테리어·건축자재·임가공의 선두주자



대표 정삼용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앞선 기술력과 신제품개발로 업계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성CNC산업(포천시 기산면 금현리 1149, 대표 정삼용)은 NC생산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지난 1994년 유성CNC산업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5년 후엔 램핑, 몰더 생산라인 설립투자 및 가공과 2004년에는 장기동(7자) 생산라인 가동으로 약 15년 동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을 약 2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공 업계의 정상을 달리고 있다.

서 진공과 가압을 효과적으로 작동 시킴에 따라 NC나 몰딩 등과 같은 3차 곡면 형상의 재료 표면 및 측면부에 초산비닐수지를 사용하여 오버레이 하는데 쓰이는 방법, 전사&아크릴 옛지부(측면을 전사지(필름)를 이용하여 마감처리 하는 방식, 아크릴 옛지 측면을 전사지가 아닌 아크릴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마감 처리하는 방식) 등 임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부서를 약 40여명의 정예화 된 직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최근 유성CNC산업 제품 개발 팀은 그동안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우드펄프(곤죽)란 신물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지난 15일 자사에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품평회를 마쳤다. 유성CNC산업은 친환경소재인 우드펄프(곤죽)를 개발하기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결과 수입제품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제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는 유성만의 자부심과 공지는 물론 더 나아가 국내 가구, 인테리어, 건축자재 업계에 큰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성CNC산업에서 자체 개발한 우드펄프(곤죽)는 수입해 사용하던 제품보다 다양한 디자인·폼질·활용도·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입곤죽과 비교해 유연성과 인장성의 강도 및 색상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으로 차별화

국내최초 우드펄프(곤죽)개발 품평회 성황 수입곤죽과 비교 단가와 품질 면에서 우수

현재 유성CNC산업은 CNC부(컴퓨터 수치 제어기로서 각종 NC공작기계), 재단부(메인 화면의 좌표를 보여 해당 자재의 치수를 입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하는 방식), 장기동(7자)&몰더부(일반적으로 장과 기타 가구에 필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소재, 몰더는 몰딩의 전작업으로서 낱물을 이용하여 가공소재에 띠 모양으로 연속된 볼록부인 면(요철)을 가공하는 작업), 곤죽&램핑부(가구장식, 인테리어, 전자재 등 폭 넓게 사용하는 물질로서 각종 금형제작을 통해 무늬를 표출시킬 수 있는 물질, 램핑 작업은 장기동(7자), 몰더 작업후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작업으로 다양한 색상의 시트를 입히는 작업), 도장&멤브레인부(가구 제조시 가구를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멤브레인이 아닌 페인트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 멤브레인은 진공과 가압 장치를 지니는 것으로

를 선연했고, 국산화에 따라 부가가치가 커 대 효과를 기대하며, 협력업체에서는 수입 곤죽으로는 어려웠던 전자재, 인테리어 시장 및 가구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 및 모양이 어려운 제품생산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가구시장의 임가공비는 최저가로 임가공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에서는 친환경소재인 우드펄프(곤죽)가 발전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구매욕구에 충족되리라 믿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계속 확보해 나아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국내시장에 출시해 이 분야에 주도적인 기업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Tel. 031)544-4045-6, Fax. 031)544-8313 정영갑 기자 jpk61@paran.com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앞선 기술력과 신제품개발로 업계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성CNC산업.

행복한 보험이야기 25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오는 4월부터 각종 보험료가 달라진다. 올 4월부터는 보험사별 자체 경험 위험률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 편차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중장기 건강보험, 암보험 등 보험종목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되면서, 각 상품별로 타이밍을 잘 맞추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위험률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암 보험이나 실버보험 등은 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되지만 어린이 보험, 상해보험 등은 보험료가 최대 10% 인하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생각중이라면 이러한 변수를 잘 조정하여 보험사와 상품별로 특과 실을 잘 따져서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모델별 기준등급이 손해율에 따라 변동되면서 보험료가 4% 범위 내에서 오르내린다. 차량 등급을 1

등급에서 11등급까지 분류하고 6등급을 기준으로 손해율이 양호할 경우 등급이 향상되면서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반대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개발원이 차량모델별 등급변경 기준안을 배포한 것을 기준으로 자사 보유 고객의 차량 손해율을 검토해 자체 등급을 부여하여 다음 달부터 조정할 방침이다. 등급에 따라 평균 2%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번이 최초로 변경되는 기준안의 경우 최대 4% 인상, 최대 4% 인하의 보험료 변동이 생긴다. 다음으로 질병, 입원, 수술 등과 관련된 위험률 기준이 바뀌면서 질병보험과 암 보험료는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암보험의 경우 진성결핵 증가 등·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암으로 분류되지 않던 경계성 종양이 암으로 편입되면서 암 보험료 인상 요소가 발생된 것. 암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갑상선 암과 유방암의

경우는 보장금액을 대폭 축소한다.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대폭 줄이는 형태로 상품이 변경되는 것이다. 일부 상품은 보험료 인상 대신 갱신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갱신형 상품은 3년, 5년 등 일정 주기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 가입사를 받는 것이다. 이 때 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이런 상품들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상품들은 보장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기에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다.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보험금 지급이 줄어 위험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최대 10% 인하를 하게 된다. 이렇듯

인상되는 상품과 인하되는 상품을 잘 구분하여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보험금, 이는 만큼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나 보험 중개사, 손해 사정인 등 보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아는 직업인들에게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그만큼 보험에 대해 많이 알기에 보험금도 다 챙겨서 타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은 유능한 설계사를 만나지 못하는 이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밖에는 지급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보험 가입 고객들은 보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신축 상가 임대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미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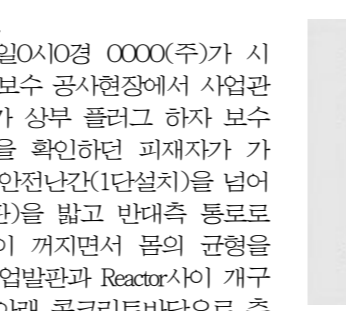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후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으로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2~4489)

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발판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 2006년 09월01일(수) 0000(주)가 시공하는 Plant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사업관리과장인 피재자가 상부 플러그 하자 보수 작업중 작업과정을 확인하던 피재자가 가설 작업발판에서 안전난간(1단설치)을 넘어 보온마감재(합석판)를 밟고 반대측 통로로 내려오다 합석판이 꺼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실족하여 작업발판과 Reactor사이 개구부를 통하여 5m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사고발생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시 일부 설치누락개소가 발생하여 1개면이 기존 배관 Line이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상부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동 개소로 피재자가 중간대를 넘어가다 사고 발생
나. 피재자의 불안정한 행동
• 사고발생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에 이르는 지정통로가 있었고, 피재자외의 근로자는 지정통로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자가 안전난간을 무리하게 넘어 반대측통로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작업발판과 인접구조물 사이 개구부로 추락
▶ 동종재해 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철저히
• 사고발생 장소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가설작업발판상에 안전난간을 설치시 일부 설치누락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설치
-발판표면에서의 높이 90cm이상 120cm이하의 상부난간대 설치
-상부난간대와 발판표면 중간에는 중간난간대 설치(45cm정도 높이)
나.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의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 방지를 위하여 이동경로 지정 및 주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가. 안전난간 설치 철저히
• 사고발생 장소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가설작업발판상에 안전난간을 설치시 일부 설치누락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설치
-발판표면에서의 높이 90cm이상 120cm이하의 상부난간대 설치
-상부난간대와 발판표면 중간에는 중간난간대 설치(45cm정도 높이)
나.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의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 방지를 위하여 이동경로 지정 및 주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Q 등급제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날까요?
A 현재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소득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의 대표 값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본인의 실제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선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Q 그러면 저역 취득시 등 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기존의 신고방 법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신고하시던 바와 같이 가입자의 취득신고서에 실제의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신고하신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Q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소득의 상·하한액도 바뀌게 되나요?
A 소득 상·하한액은 최저 220,000원, 최고 3,600,000원으로 95년도에 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의 상·하한액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하한액 조정여부와 그 수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